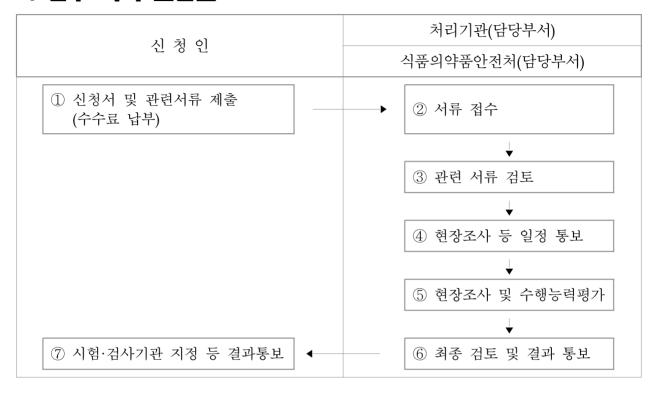
국외 시험 검사기관의 지정

I. 업무 처리 흐름도



II. 업무 처리 세부 내용

1. 제출 서류

- 1) 신청서(규칙 별지서식 제8호)
- 2) 일반현황(연혁 포함)
- 3) 시험·검사기관의 조직 및 인력현황(경력사항 포함)
- 4) 시험·검사 시설의 평면도
- 5) 시험·검사 설비·장비 및 기구의 보유현황(시험·검사실 배치도 포함)
- 6) 지정 받으려는 시험·검사 대상에 대한 최근 3년간 시험·검사 실적 (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관은 국내 식품전문 시험·검사기관의 최근 3년 실적으로 대신할 수 있음)
- 7) 수출국 정부가 검사기관으로 공인한 서류 사본(법 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)
- 8) 시험·검사성적서 서식(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시험·검사 성적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)

2. 접수

1) 접수처 : 본부 고객지원센터

2) 수수료

민원업무	수수료	비고	
시험·검사기관 지정 신청	380,000원		
	전자민원 시 342,000원		
변경 승인	190,000원 전자민원 시 171,000원	시험·검사의 분야·품목 또는 항목	
	전자민원 시 171,000원	기업 검사의 군작 품속 오는 영속	

* 현지 조사 시 비용 추가 부담

<현지 조사 비용(예시)>					
			3인 3일 조사 기준,	단위: 미 달러화(\$)	
국가	기간	항공료	일비,식비,숙박비	합계	
미국	4박5일	7,200	2,617	9,817	
유럽	4박5일	9,000	2,617	11,617	
아시아(태국,베트남)	4박5일	2,400	1,897	4,297	

3. 평가 방법 및 평가 기준

평가 방법	평가 기준
①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	지정요건 적합여부 확인
② 품질관리기준 평가	80점 이상
③ 시험·검사 수행능력 평가	80점 이상 (※ 단, 평가항목별 항목평점 60점 이상, 숙련도평가 결과 양호)

Ⅲ. 시험 검사기관 운영 준수 사항

- 1. 국외시험·검사기관 지정요건[시행규칙 별표4]를 준수하여야 합니다.
 - 1) 수출국 정부가 설립하거나 공인한 검사기관은 수출국 정부에서 정한 지정 요건 또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시험 및 교정기관 자격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 - 2)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·검사기관이 해외에 설립·운영한 기관은 식약처장이 정한 인력, 시설, 장비 및 기구 등의 지정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.
- 2. 시행규칙 [별지 제9호서식] 국외시험·검사기관 준수사항과 [별지 제10호서식] 시험·검사성적서 서식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 - 예) 시험·검사 기준 및 방법 준수, 문서보관(3년) 등
- 3.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인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할 수 있으나, 그 결과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시험하고 판정해야 합니다.
- 4. 시험·검사 성적서 발행 실적, 숙력도 평가 참여 실적을 매년 제출하여야 합니다.